

중 국

[판례 분석] 온라인 도서 판매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판단 기준

2026. 09. 09.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판매한 자의 합법 출처의 항변은 상품의 취득경로가 확인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의 규모, 전문성, 시장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함. 특히 온라인 도서 판매자의 경우 소규모 판매자라는 사정뿐 아니라 허가받은 도서 판매업자라는 지위와 정품 대비 현저히 낮은 매입가격 등 구체적 거래조건을 종합하여 침해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를 판단해야 함.

1. 현황

최근 중국의 불법복제 도서 유통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요 판매경로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중국 국가판권국과 전국 ‘음란물·불법출판물 단속’ 판공실이 발표한 2025년 도서 분야 침해·불법복제 단속 전형사례를 보면 교재·참고서·아동도서·베스트셀러 등을 불법 인쇄한 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다수 상점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¹⁾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자가 침해 도서의 합법적 출처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공급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가 중요한 문제로 될 수 있음. 특히 원클릭 대행배송 방식(一键代发)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와 전문성 및 거래가격 등이 합리적 주의의무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음.

본문에서는 불법복제 도서의 온라인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사례를 통하여 온라인 도서 판매자가 합법 출처의 항변을 하는 경우 합리적 주의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琼0107民初15122号
-------	----	---------------------

1) 国家版权局, https://www.ncac.gov.cn/xxfb/ywxx/202605/t20260527_991678.html

	2심	(2026)琼73民终49号	
관할 법원	1심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충산구 인민법원(海南省海口市琼山区人民法院)	
	2심	하이난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상소인
	B 씨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의 원고적격 여부 2. B 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B 씨의 법적 책임	
	2심	1. B 씨의 합법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는지 여부 2. A 회사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의 적절성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는 원고적격이 있음. 2. B 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3. B 씨는 A 회사의 합리적 지출비용 1,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1. B 씨의 합법 출처의 항변은 성립하지 않음. 2. A 회사가 주장하는 배상금액은 적절하지 않음. 1심 판결을 철회함. B 씨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비용 2,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1항 제6호, 제52조 제11호,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59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제19조 ·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知识产权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제4조 · 개인독자기업법(个人独资企业法) 제2조, 제28조		
최종 판결일	2026년 6월 22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Irene C. Fountas, Gay Su Pinnell, Heinemann 등이 저작권자로 표시된 「Heinemann 수준별 읽기」 시리즈 가운데 GK 시리즈 70권(이하 “사건 도서”라 함)을 포함한 360권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발행권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음.

한편 B 씨는 X 상거래 플랫폼의 한 스토어에서 「Heinemann GK 기초 70권 합본」(이하 “분쟁 도서”라 함)을 원클릭 대행배송 방식으로 조달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Y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하였음. A 회사는 분쟁 도서가 정품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쇄 품질이 낮고 저작권 페이지와 저작자 등 권리표시가 없으므로 불법복제 도서이며, B 씨가 무단으로 분쟁 도서를 판매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A 회사는 B 씨가 제출한 X 상거래 플랫폼 주문 화면만으로는 직접 공급자의 실제 신원과 적법한 권한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법적 출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또한 B 씨가 출판물 소매 및 인터넷 판매를 영업범위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일반 소비자보다 높은 저작권 확인 및 매입 심사의무를 부담하며 분쟁 도서의 매입가격이 정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고 분쟁 도서의 인쇄 상태와 권리표시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B 씨가 침해 가능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B 씨는 제출한 주문 화면에 구매경로, 구매시점, 수령인, 수령주소 및 물류정보가 모두 나타나 있어 분쟁 도서의 공급 경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합법적 출처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항변함. 또한 Y 온라인 서점은 소규모 개인 온라인 상점으로서 실물을 보유하지 않는 원클릭 대행배송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분쟁 도서의 인쇄 품질이나 저작권 페이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고 출판물 영업자라는 사정만으로 대형 출판·유통사업자와 동일한 심사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항변함.

이와 같은 주장과 항변을 종합하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B 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B 씨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a. 권리 귀속

A 회사가 제출한 수권서와 사건 도서의 표지·저작권 페이지·후면 표시 등에 의하여 A 회사가 사건 도서의 저작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사건 도서의 발행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음이 확인됨.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저작물의 초고·원본·합법 출판물·권리 취득계약 등은 저작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반대 증거가 없는 이상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대하여 중국 대륙 지역에서 배타적 발행권 및 권리구제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됨.

b. 저작권 침해 여부

이어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6호와 제52조 제11호를 근거로 분쟁 도서가 사건 도서와 내용이 동일한 복제물이고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비해 분쟁 도서가 인쇄 품질이 낮으며 저작권 페이지와 저작자 등 권리표시가 없는 점 등의 차이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분쟁 도서는 A 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불법복제 도서로 인정됨. 따라서 B 씨가 운영하는 Y 온라인 서점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분쟁 도서를 판매한 행위는 A 회사가 사건 도서에 대하여 가지는 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의 대상이 됨.

c. 합법 출처의 항변

분쟁 도서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경제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B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59조,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 및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를 근거로 합법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매자가 침해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을 것과 주관적으로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이 함께 요구됨. 특히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는 합법적인 구매경로, 합리적인 가격, 직접 공급자 등을 합법적 취득의 증명사항으로 들고 있으며, 출처 증거가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합리적 주의의무와 상응하면 판매자가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영업규모, 전문성, 시장 거래 관행 등이 주의의무의 정도를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객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B 씨가 제출한 X 상거래 플랫폼 주문 화면의 물류 정보가 A 회사가 구매하여 수령한 분쟁 도서의 물류 정보와 일치하므로 B 씨가 분쟁 도서를 X 상거래 플랫폼 상점에서 구매하였다는 취득 경로가 증명됨. 주관적 요건에 관하여는 판매자의 영업규모와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소매상은 일정 규모의 상업주체와 침해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소규모 소매상에게 지나치게 높은 주의의무를 설정해서는 안 됨. B 씨는 소규모 소매상이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정상적인 시장 거래규칙에 따라 상품을 취득하였으며 상품의 출처가 명확하고 그 경로도 합법적이며 공급자도 특정하였으므로 자신의 영업규모와 전문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B 씨는 실제로 분쟁 도서가 침해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할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합법 출처의 항변이 성립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a. 권리 귀속 및 사건 도서의 가격

본 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동일하다고 확인하였고 추가로 Heinemann 측 설명 및 확인서에 의하여 사건 도서에 관한 독점적 발행권 및 A 회사에 대한 중국 대륙 지역의 독점 판매, 권리구제 권한을 확인함. 또한 A 회사가 제출한 외국어 원판도서 판매계약의 총가격과 주문수량을 기준으로 정품 도서 한 권의 가격을 약 28.9위안으로 계산하고 사건 GK 시리즈 70권의 정품 가격을 약 2,023위안으로 인정됨.

b. 합법 출처의 항변

합법 출처의 항변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59조와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9조를 근거로 B 씨가 자신이 판매한 분쟁 도서의 합법적 출처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함. B 씨는 X 상거래 플랫폼 상점의 원클릭 대행배송 방식으로 “GK 시리즈 70권 합본”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매입가격은 38.05위안으로 정품 70권의 가격인 약 2,023위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음.

B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이므로 일반 소비자보다 도서의 저작권상 진위 여부를 구별하고 매입 경로를 심사할 의무가 더 높음. 분쟁 도서의 매입가격이 정품 도서의 합리적인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가격 차가 통상적인 거래상황에 비추어 명백히 비정상적이므로 B 씨는 자신이 구매하여 판매하는 도서가 침해 상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가 자신의 영업자 지위에 부합하는 신중한 매입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B 씨의 합법 출처의 항변에는 사실상·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B 씨는 A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권리구제 비용의 범위

① 1심 법원의 판단

비록 B 씨의 합법 출처의 항변이 인정되어 B 씨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합법 출처의 항변은 비침해 항변이 아니므로 항변이 성립하더라도 침해 상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A 회사의 권리구제 활동은 실제 침해행위의 발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합리적인 권리구제 비용은 인정되어야 함. 또한 Y 온라인 서점이 개인독자기업으로서 이미 말소되었더라도 <개인독자기업법> 제2조와 제28조에 따라 원 투자자는 기업 존속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책임을 부담하며 A 회사가 법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B 씨가 해당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B 씨는 A 회사의 합리적 지출비용 1,000 위안을 지급해야 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B 씨의 합법 출처의 항변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B 씨가 A 회사의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권리구제 비용을 함께 배상하여야 함.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우선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사용료를 참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침해행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이때 권리자가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지출비용도 배상액에 포함됨.

본 안건에서 A 회사는 1심에서 권리 도서 70권에 법정손해배상의 최저 기준을 곱하는 방식과 공증비, 변호사비, 인쇄비, 타임스탬프 증거수집비, 출장비, 통신비 등을 근거로 합계 30,000위안을 청구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 권리구제 비용도 주장함.

이 같은 A 회사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비용을 2,000위안으로 결정함.

- i) 사건 GK 시리즈 70권의 정품 가격이 약 2,023위안인 점
- ii) 분쟁 도서의 매입가격이 38.05위안이고 판매가격이 49.2위안인 점
- iii) A 회사가 주장한 합리적 지출 비용 가운데 공증비와 인쇄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2심에서 추가로 필요한 지출이 발생한 점

3. 판례분석

1) 합법적 출처 항변의 객관적 출처 증명과 주관적 무과실 판단

본문 판례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은 서로 달랐음. 1심은 합법 출처의 항변에서 객관적 출처 증명과 주관적 무과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였고, 2심도 기존 거래사실을 유지하면서 판매자의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항변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두 판단은 출처 확인과 무과실 판단을 구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저작권법> 제59조와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침해 복제물을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취득했는지에 관한 출처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 출처 증거가 자신의 합리적 주의의무와 상응하는 경우에 비로소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추정으로 연결될 수 있음. 즉 합법 출처의 항변은 “공급자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객관적 출처 증명과 “판매자가 그 상품의 침해 가능성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가”라는 주관적 무과실 판단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1심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X 상거래 플랫폼 주문 화면의 수령인, 주소, 물류정보가 A 회사의 증거수집 주문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분쟁 도서의 실제 취득경로가 특정되었다고 보았음. 이는 플랫폼 거래기록과 물류정보가 연결되어 판매자가 어떤 공급경로를 이용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1심 법원도 이러한 출처 증명만으로 곧바로 항변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B 씨가 소규모 판매자라는 점과 정상적인 시장 거래규칙을 따랐다는 점을 검토하여 주관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1심 판결 자체도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구분하고 있었음.

2심 법원은 정품 GK 시리즈 70권(사건 도서)의 가격 약 2,023위안과 B 씨의 실제 매입가격 38.05위안 사이의 현저한 차이 및 B 씨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라는 지위를 중심으로 B 씨가 침해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2심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B 씨가 침해 가능성을 알았어야 한다고 보아 주관적 무과실 요건을 부정함. 따라서 1심과 2심의 차이는 새로운 거래경로가 확인되었는지 여부보다 이미 확인된 거래조건과 사업자 지위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있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합법 출처의 항변에서 출처 자료의 존재와 항변의 성립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플랫폼 주문기록과 물류정보를 통해 공급경로가 확인되더라도 거래가격이나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 등 거래 당시 확인 가능한 사정에서 침해 가능성을 의심

할 객관적 이상징후가 나타난다면 판매자는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는 추가 확인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2) 합리적 주의의무를 조정하는 요소로서 판매자의 사업자 지위와 거래가격

합법 출처의 항변의 성패를 가른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합리적 주의의무의 강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1심과 2심의 평가임.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는 영업규모, 전문성, 시장 거래관행 등을 합리적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 이 요소들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본 사건처럼 영업규모는 작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인 경우 그 영업 규모와 전문성이 서로 다른 방향의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1심 법원은 B 씨가 소규모 소매상이라는 점을 중심에 두고 대형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침해 인식능력과 심사의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또한 B 씨가 X 상거래 플랫폼의 주문 기록과 물류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상품을 취득하였고 상품의 출처와 거래채널이 명확하며 공급자도 특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영업규모와 전문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함.

반면 2심 법원은 B 씨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가를 받아 도서를 판매하는 영업자라는 점을 중시함. 일반 소비자보다 도서의 저작권상 진위 여부를 구별하고, 매입 경로를 심사할 의무가 더 높다고 보고 정품 70권 약 2,023위안과 실제 매입가격 38.05위안이라는 현저한 가격차를 결합하여 침해 가능성을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함. 즉 2심은 사업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도서 판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거래조건 자체가 현저히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도 그 지위에 상응하는 확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본 것임.

따라서 합리적 주의의무는 판매자의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규모, 사업자 지위와 전문성, 거래가격의 정상성, 공급경로의 구체성 등 서로 다른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조정되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4. 시사점

본 판례는 온라인 도서 판매자의 합법 출처의 항변을 판단할 때 플랫폼 주문기록 등을 통해 공급경로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항변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조건과 판매자의 지위에 비추어 침해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는 등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琼73民终49号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 https://www.ncac.gov.cn/xxfb/ywxx/202605/t20260527_991678.html